제33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5. 7. 18.)에서 의결된 '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' 을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.

2025년 7월 18일

고흥군의회의장 유제종

고흥군의회 규칙 제2025-62호

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, 이 경우 의원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.

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8조(방청의 허가) 본회의 방청은 의장이,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.

제90조제1항 중 "의장"을 "의장 또는 위원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수 있다. ② ~ ⑤ (생 략)	제56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, 이 경우 의원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88조(방청의 허가)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.	제88조(방청의 허가) 본회의 방청은 의장이,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.
제90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. ② ~ ④ (생 략)	제90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① ---- 의장 또는 위원장---------- -----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